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6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최혁진
강경숙 · 박은정 · 김선민
차규근 · 서왕진 · 이해민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

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를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

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

2. 제146조제3항제2호, 제170조제2항제2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u> <u>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u> <u>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u> <u>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u> <u>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u> <u>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u> <u>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u> <u>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u> <u>본다.</u>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 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5. (생 략) 6. <u>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u> <u>제2항제1호</u> 또는 「신용협동 <u>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u> <u>(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u> <u>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u>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u> ----- ----- ----- -----

아니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

6의2.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7. ~ 13.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을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을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
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
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0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
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해양
수산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퇴임 또는 퇴직
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
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
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
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임원
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
2. 제146조제3항제2호, 제170조
제2항제2호 또는 「신용협동

	<u>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원</u> <u>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u> <u>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u> <u>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u> <u>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u> <u>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	--